

기관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폐지하여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진입부담을 해소하고, 철도시설의 보호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안전조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근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18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공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증권금융회사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중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가목부터 자목까지”로 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제7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후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7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제77조제4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준시점”을 “기준시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준지표(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

서"라 한다)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자산운용보고서"를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4.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5.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6.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7.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2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를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6조의6제2항 본문 중 “제176조의5제1항”을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분할합병”으로, “외부평가기관”을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8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7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제20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과”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제262조제1항 후단 중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

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

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제2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

상을 제292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 및 외국 정부

2.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3.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4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0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된 경우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4. 기준가격 산정오류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2. 제4항제4호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3. 제4항제5호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⑥ 법 제2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9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제2항제5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라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4.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채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제292조제5항(중전의 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
선시설

제294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 제292조제5항제4호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제29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 제292조제3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외국회사에 투자한 경
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92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97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0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
권이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판매 보수·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집합투자기
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종류
형집합투자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
고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
로 하는 공모 상장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기
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 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배제(영 제6조제4항제1 4호 신설)

- 1)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담보제공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함.
- 2)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보수의 한도를 하향 조정(영 제77조제4항)

- 1)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를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한도를 각각 100분의 2 및 100분의 1로 인하함.
- 2) 이에 따라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업 합병 관련 규정 정비(영 제176조의5제1항, 제176조의6제2항 및 제3항)

1)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시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정함.

2) 기업 합병 시 외부평가와 관련된 법령 적용의 불명확성이 제거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연계 불공정거래 대상 증권 추가(영 제207조제3호마목 신설)

1) 지분증권의 한 유형인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연계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상장증권의 시세조정 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영 제271조의2 신설)

1) 부실징후기업 등에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할 것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2) 이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